

심의결과 위안대로그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제 25 호	제 12 차	1990. 5. 17	총재 김건

의안 "금융기관여신융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여신융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제의취지 1990년 5월 8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대책」에 적극 부응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함으로써 경제안정 기조를 다지는 동시에 한정된 금융자금이 생산부문에 우선 공급되도록 투기 또는 과소비의 소지가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을 제한하고자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36
45

< 참고사항 >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① (생 령)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권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여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령)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조 ~ 제3조 (생략)</p> <p>제3조의 2 (담보취득의 제한) 금융기관은 여신취급시 연면적의 1/20이상이 <별표> 제3호의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건물 및 당해대지를 담보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 2 (담보취득의 제한) 금융기관은 여신취급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가 중소기업지원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면적의 1/20이상이 <별표> 제3호의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건물 및 당해 대지 2. 연면적의 1/20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건물 및 당해 대지(주택 및 당해 대지 제외)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법인소유 비업무용부동산 및 동 「규칙」을 준용하여 판정된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비업무용부동산 4.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유희토지 등 5.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서 정한 사치성 재산 6. 제3자명의 부동산 	<p>- 담보취득제한대상 부동산 범위 확대</p> <p>- 예외인정사항의 결정을 총재에게 위임</p>
<p>제4조 ~ 제12조 (생략)</p> <p>(신 설)</p>	<p>제4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0. 6. 1 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금융기관이 취득하고 있는 담보취득제한대상 부동산담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p>	<p>시행일자 명시</p> <p>- 가취득한 담보취득제한대상 부동산담보에 대한 경과기준 마련</p>